

## 2019년 다중이용업소법 기본서 정오표(19.6.10)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61 ㉔ (개정, 19.4.22.)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교육일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p 61 ④ (개정, 19.4.22.)	2년 이내	2년 이내에 1회 이상
p 61 실전연습	때한	대한
p 61 (3)㉑㉒ (개정, 19.4.22.)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신규 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p 61 (3)㉓ (개정, 19.4.22.)	㉑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p 62 (1) (개정, 19.4.2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p 63 (2) (개정, 19.4.2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p 71 첫줄 ㉕ 및 p 87 ㉖ 추가(개정, 19.4.22.)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p 83 소방안전교육 4) ㉗ ㉘ 대체 (개정, 19.4.22.)		㉗ 신규 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㉘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p 84 7) 사이버 소방안전 교육(개정, 19.4.2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P 92 13번 (개정, 19.4.22.)	안전시설 등의 기타 교육대상자	신규교육대상자 중 안전시설 등의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p 92 16번 (개정, 19.4.2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p 97 7번 해설 B (개정, 19.4.22.)	다만,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통보를 한 경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한 교육일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는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p 97 8번 해설 (개정, 19.4.22.)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1회 이상
P 98 10번 문제 (개정, 19.4.22.)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P 98 10번 해설 (개정, 19.4.22.)	①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②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① 신규 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②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p 99 15번 문제 G (개정, 19.4.22.)	소방청장은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p 99 15번 문제 M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p 99 15번 해설 (개정, 19.4.2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M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p 99 15번 정답 (개정, 19.4.22.)	G	M
p 126 (1)① (시행, 19.7.3.)	1억원	1억 5천만원
p 126 (1)② (시행, 19.7.3.)	2천만원 1급 2천만원 ~ 14급 80만원	3천만원 1급 3천만원 ~ 14급 80만원
p 126 (1)③ (시행, 19.7.3.)	1억원 1급 1억원 ~ 14급 630만원	1억 5천만원 1급 1억 5천만원 ~ 14급 1천만원
p 126 (1)④ (시행, 19.7.3.)	사고 1건당 1억원	사고 1건당 10억원
p 126~127 도표(부상) p 260~263 도표(부상) (시행, 19.7.3.)	1급 2천만원 2급 1천만원, 3급 1천만원 4급·5급 900만원, 6급·7급 500만원, 8급·9급 240만원, 10급·11급 160만원, 12급 13급, 14급 80만원	1급 3천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4급 1천만원, 5급 900만원, 6급 700만원, 7급 500만원, 8급 300만원, 9급 240만원, 10급 200만원, 11급 160만원, 12급 120만원, 13급 14급 80만원
p 127~ 128 및 p 264~ 267 도표 후유장애 (시행, 19.7.3.)	후유장애 1급 1억원 2급 9천만원, 3급 8천만원, 4급 7천만원, 5급 6천만원, 6급 5천만원, 7급 4천만원, 8급 3천만원, 9급 2,250만원 10급 1,880만원, 11급 1,500만원, 12급 1,250만원, 13급 1,000만원 14급 630만원	후유장애 1급 1억 5천만원 2급 1억 3,500만원, 3급 1억 2천만원 4급 1억 500만원, 5급 9천만원 6급 7,500만원, 7급 6천만원, 8급 4,500만원, 9급 3,800만원 10급 2,700만원, 11급 2,300만원, 12급 1,900만원, 13급 1,500만원 14급 1천만원
p 135 2번(시행, 19.7.3.)	1억원	1억 5천만원
p 138 4번 문제 (시행, 19.7.3.)	A 1억원 B 2천만원 G 1억원	A 1억 5천만원 B 3천만원 G 1억 5천만원
p 138 4번 문제 해설 (시행, 19.7.3.)	피해자 1명당 1억원 부상의 경우 2천만원 사고 1건당 1억원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사고 1건당 10억원
p 144 24번 문제 (시행, 19.7.3.)	A 1억원 B 2급 및 3급 1천만원 M 1억원	A 1억 5천만원 B 2급 1,500만원 G 10억원
p 144 24번 해설 대체 (시행, 19.7.3.)		G 틀림,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1급 1억 5천만원, 2급 1억 3,500만원, 3급 1억 2천만원), 부상의 경우 3천만원의 범위(1급 3천만원, 2급 1,500만원)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한다.
p 202 도표 라개정 19.4.2)	1회 50, 2회 100, 3회 이상 300	1회 300, 2회 300, 3회 이상 300
p 202 자.	법 제13조의2제1항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

p 202 도표 추가 (개정 19.4.2)		하.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은 경우 1회 300, 2회 300, 3회 이상 300
p 235 (1) ① 1. 대체 및 3. 추가 (개정 19.4.22)	1. 영 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p 235 (1)③ 1. 1) (개정 19.4.22)	1)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신청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교육일까지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신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p 235 (1) ④ 1. (개정 19.4.2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신규 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p 235 (1) ④ 2 (개정 19.4.2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p 236 (3)①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p 236 (3)②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p 239 (개정 19.4.22)	규칙 제11조의2	규칙 제11조의3
p 239 규칙 제11조의2 신설(개정 19.4.22)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① 법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p241 (1) ① (시행. 19.7.3.)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p 241 (1) ① (시행. 19.7.3.)	1. 1명당 1억원 4. 1건당 1억원	1. 1명당 1억 5천만원 4. 1건당 10억원

# 최근 법령 개정 사항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74호, 2019. 4. 2.,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보험금액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3천만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보험금액을 상향 조정 하며,(시행, 19.7.3.)
- 2)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을 그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22.] [행정안전부령 제113호, 2019. 4. 22.,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정하는 한편,
- 2)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주체에 소방청장을 추가하고,
- 3)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 설치하는 비상구 의 추락방지 장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곳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 2020.4.23. 시행되는 것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정보전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